

2025년도 특정감사

특정감사 결과보고서

- 연구개발비 관리 점검 5차 -

2025. 12.

KEIT 한국신업기술기획평가원
감 사 단

목 차

I . 감사실시 개요	1
1. 감사배경 및 목적	1
2. 감사대상 및 감사 중점사항	1
3. 감사기간 및 인원	2
4. 점검대상 과제	2
II . 감사결과	4
1. 총평	4
2. 지적사항 총괄	4
3. 지적사항 요약	4
III .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요구	6
1. 처분요구사항 일람표	6
2. 현지조치사항 및 모범사례 일람표	6
첨부.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7

I.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배경 및 목적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이하 “기획평가원”이라 한다)은 산업통상부로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평가관리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다.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연구개발비 집행의 투명성 확보가 필수적이나, 부적정한 연구개발비 집행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감사단에서는 참여연구자의 연구개발비 집행 현황과 기획평가원 직원의 연구개발비 관리 업무에 대한 점검을 통해 연구개발비의 부적정 집행을 방지하고,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연구개발비 관리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2. 감사대상 및 감사 중점사항

이번 감사에서는 연구개발비 부정사용 적발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기획평가원의 “실시간연구비관리시스템(RCMS)” 내 탐지도우미 및 집행분석보고서 기능을 활용하여 사용기준 위반이 의심되는 과제대상으로 연구개발비 부정사용을 점검하고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집행과 관련한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개선사항을 도출하는데 감사역량을 집중하였다.

[표 1] 감사 중점사항

감사 중점사항
- RCMS 탐지도우미 기능을 통해 확인된 집행 내역
- RCMS 집행분석에서 '조사' 단계에서 확인된 연구개발비 집행 내역

3. 감사기간 및 인원

본 감사는 2025. 12. 8.부터 같은 해 12. 10.까지 3일 간의 예비조사 기간을 거쳐, 조사 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토대로 감사반장 1명, 감사반원 2명을 투입하여 2025. 12. 22.부터 같은 해 12. 26.까지 5일간 실지감사를 실시하였다. 감사결과는 내부감사인 검토 과정을 거쳐, 2025. 12. 29에 상임감사가 최종 확정하였다.

4. 점검대상 과제

기획평가원의 실시간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RCMS)에서는 연구개발기관의 연구비 집행 데이터를 분석하여 연구비가 목적 외로 사용되거나 부적절하게 집행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탐지도우미'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감사는 RCMS 탐지도우미 기능을 활용하여 사후 환급가능한 부가가치세를 미복원한 것으로 탐지된 2건의 과제를 점검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표 2] 점검대상 과제

연 번	과제 번호	연구개발과제명	해당기간	대상기관명	부서명
1	♠♠♠♠ ♠♠♠♠	△△△△△△△△△△△△△△△△	2021-04-01 ~2026-12-31	◇◇◇◇(주)	□□□□ 실
2	RS-♠♠- ♠♠♠♠♠♠ ♠♠♠♠♠♠	▲▲▲▲▲▲▲▲▲▲▲▲▲▲▲▲	2022-04-01 ~2026-12-31	(주)■ ■ ■ ■	♣♣♣♣♣ 실

II. 감사결과

1. 총평

환급가능 부가가치세 미복원 등 회수 기준 사례 해당 여부를 점검하고 시정하게 함으로써 투명하고 올바른 연구개발비 사용을 유도

2. 지적사항 총괄

(단위: 건, 천원)

합계			변상 (금액)	징계 (인원)	시정(금액)				주의 경고 (인원)	주의 (인원)	개선	권고	통보	고발 (인원)	현지 조치	모범 사례 (인원)
총 건수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금액			소계	회수	감액	기타								
3	-	1,425	-	-	-	-	-	-	-	-	-	-	-	-	2 (1,425)	1

3. 지적사항 요약

【처분요구사항 : 해당없음】

【현지조치사항】

1) 사용금액에 포함된 환급가능 부가가치세의 미복원

환급가능한 부가가치세를 사용금액에 포함하였으나 RCMS를 통해 복원하고 있지 않는 등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에 맞지 않게 집행한 2건에 대하여 복원하도록 현지조치하였다. (현지시정 2건)

【모범사례】

1) 연구개발비의 부적정 집행 적발업무 적극수행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 부적정 집행의 법률검토를 수행하는 등 연구개발비 집행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한
관련자에 대해 타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격려(모범사례 1건)

Ⅲ.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요구

1. 처분요구사항 일람표

지 적 사 항	순번	조 치 요 구 사 항	조치 구분	처분 요구일	조치 기한일	처리부서
환급가능 부가가 치세 미복원	1	○ 사후 환급가능한 부가가치 세를 사용금액에 포함하였 으나 미복원한 연구개발비 974,554원을 복원하도록 조치	현지시 정	-	-	□□□□□실
	2	○ 사후 환급가능한 부가가치 세를 사용금액에 포함하였 으나 미복원한 연구개발비 450,000원을 복원하도록 조치	현지시 정	-	-	♀♀♀♀♀♀실

2. 현지조치사항 일람표

지 적 사 항	순번	조 치 사 항	조치 구분	처리부서
환급가능 부가가 치세 미복원	1	사후 환급가능한 부가가치세를 사용금액에 포 함하였으나 미복원한 연구개발비 974,554원을 복원하도록 조치	현지시정	□□□□□ 실
		사후 환급가능한 부가가치세를 사용금액에 포 함하였으나 미복원한 연구개발비 450,000원을 복원하도록 조치	현지시정	♀♀♀♀♀♀ ♀♀실

3. 모범사례 일람표

제 목	순번	관계부서	성명	공적요약	기대 효과
연구개발비의 부 적정 집행 적발업 무 적극수행	2	☆☆실	◆◆◆	○ 연구비 부적정 집행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담 당자 면담조사 및 법률검토를 수행하고 감사실과 합동으로 현 장실태조사에 참여하여 연구개 발과제(1개)에서 총 231,251천원 의 부적정 집행액 환수에 기여	○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연구개 발비 집행의 투명성 향상

[첨부] 감사결과 처분요구

일련번호	1	감사자	●●●, ●●●	공개(○),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원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본부(□□□□□실, ●●●●●●●●실)	처분 요구일	2025. 12.	회신 기한일	-

현 지 시 정

제 목 환급가능 부가가치세 미복원

소 관 부 서 ○○○○○본부(□□□□□실, ●●●●●●●●실)

조 치 부 서 ○○○○○본부(□□□□□실, ●●●●●●●●실)

1. 업무 개요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이하 ‘기획평가원’이라 한다)은 「산업기술 혁신촉진법」 제39조(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의 설립 등)에 따라 산업기술혁신사업의 과제기획·관리 및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사업의 평가 및 관리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이하 “공통운영요령”이라 한다)」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한편, △△△△△△△△△△△△△△사업에서 지원한 ‘△△△△△△△△△△△△△△’ 연구개발과제는 □□□□□실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사업에서 지원한 ‘▲▲▲▲▲▲▲▲▲▲▲▲▲▲’ 연구개발과제는

♣♣♣♣♣♣실에서 담당하고 있다.

2. 관련 규정(법령) 및 판단기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6조제5항에 따르면 연구개발 기관이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연구개발비를 사용한 경우, 해당 연구개발기관을 대상으로 지급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중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연구개발비 전액을 회수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별표6]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개발비 항목별 회수 기준 예시에 따르면 환급받을 수 있는 모든 관세, 부가가치세 등 금액을 사용금액에 포함시킨 경우에는 회수하도록 되어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이번 감사에서는 연구비가 목적 외 또는 부적절하게 집행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도입되어 있는 RCMS ‘탐지도우미’ 기능을 활용하였으며, 그 중 ‘사후 환급가능한 부가가치세의 미복원’ 건을 조사하기 위하여 RCMS 전산요청기능을 통해 관련 내역을 추출하였다.

연구개발기관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 거래처에 지급한 사후 환급가능한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 매입세액공제를 받게 되므로 '환급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복원이 필요하다.

검토 결과, [표1]과 같이 2개의 과제에서 거래처에 공급가액과 함께

이체한 사후 환급가능한 부가가치세가 복원되고 있지 않은 사실이
 실지감사를 통하여 확인되어 감사인은 해당 금액에 대하여 실시간연
 구비통합관리시스템(RCMS)의 복원 기능을 통해 복원하도록 하였다.
 (현지조치)

[표1] RCMS 탐지도우미 기능을 통해 확인된 부가가치세 미복원 내역

번호	항목	세부항목	사용일자	품목	사용금액	미복원 부가세액	연구개발기관
1	연구활동비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2025.06.25	외주용역비 계약금	4,950,000	450,000	(주)■■■■■
2	연구활동비	연구활동비 기타비용	2025.10.21	라우터 회선 사용료_09월	55,000	5,500	◇◇◇◇(주)
3	연구활동비	연구활동비 기타비용	2025.10.21	외부 인터넷 회선 사용료_09월	368,000	36,800	◇◇◇◇(주)
4	연구활동비	연구활동비 기타비용	2025.10.01	본인인증서비스_09월	50,000	5,000	◇◇◇◇(주)
5	연구활동비	연구활동비 기타비용	2025.09.02	AWS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료_8월	118,878	11,888	◇◇◇◇(주)
6	연구활동비	연구활동비 기타비용	2025.09.08	도메인 구입의 건 25.09.02	60,000	6,000	◇◇◇◇(주)
7	연구활동비	연구활동비 기타비용	2025.09.15	현시관제 라우터 회선 사용료_8월	55,000	5,500	◇◇◇◇(주)
8	연구활동비	연구활동비 기타비용	2025.09.15	외부 인터넷 회선 사용료_08월	368,000	36,800	◇◇◇◇(주)
9	연구재료비	연구재료 구입비	2025.09.01	전산재료비_25.09.01	65,273	6,527	◇◇◇◇(주)
10	연구활동비	회의비	2025.08.21	회의비_25.08.21	136,364	13,636	◇◇◇◇(주)
11	연구활동비	연구활동비 기타비용	2025.08.29	라우터 회선 사용료_07월	55,000	5,500	◇◇◇◇(주)
12	연구활동비	연구활동비 기타비용	2025.08.20	외부 인터넷 회선 사용료_07월	368,000	36,800	◇◇◇◇(주)
13	연구활동비	연구활동비 기타비용	2025.08.02	AWS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료_07월	116,010	11,601	◇◇◇◇(주)
14	연구활동비	연구활동비 기타비용	2025.07.02	AWS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료_06월	111,528	11,153	◇◇◇◇(주)
15	연구활동비	연구활동비 기타비용	2025.07.18	라우터 회선 사용료_06월	55,000	5,500	◇◇◇◇(주)
16	연구활동비	연구활동비 기타비용	2025.07.18	외부 인터넷 회선 사용료_06월외	368,000	36,800	◇◇◇◇(주)
17	연구활동비	연구활동비 기타비용	2025.06.20	외부 인터넷 회선 사용료_05월	368,000	36,800	◇◇◇◇(주)
18	연구활동비	연구활동비 기타비용	2025.06.20	현시관제 라우터 회선 사용료_5월	55,000	5,500	◇◇◇◇(주)
19	연구활동비	연구활동비 기타비용	2025.06.02	AWS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료_05월	122,406	12,241	◇◇◇◇(주)
20	연구활동비	회의비	2025.05.26	회의비_25.05.26	163,637	16,363	◇◇◇◇(주)
21	간접비	과학문화활동비	2025.05.16	성과공유회(자율주행 성과전시) 20250516	4,545,455	454,545	◇◇◇◇(주)
22	연구활동비	연구활동비 기타비용	2025.06.02	라우터 회선 사용료_04월	55,000	5,500	◇◇◇◇(주)
23	연구활동비	연구실운영비	2025.05.14	사무용품_25.05.14	80,910	8,090	◇◇◇◇(주)

24	연구활동비	연구활동비 기타비용	2025.05.20	외부 인터넷 회선 사용료_04월	368,000	36,800	◇◇◇◇(주)
25	연구재료비	연구재료 구입비	2025.05.20	LTE라우터 단말기 구입_25.03.12	320,000	32,000	◇◇◇◇(주)
26	연구활동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비	2025.05.20	메가존클라우드서비스_01월	36,327	3,632	◇◇◇◇(주)
27	연구활동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비	2025.05.20	메가존클라우드서비스_02월	33,202	3,320	◇◇◇◇(주)
28	연구활동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비	2025.05.20	메가존클라우드서비스_03월	37,138	3,713	◇◇◇◇(주)
29	연구활동비	연구활동비 기타비용	2025.05.20	외부 인터넷 회선 사용료_01월	368,000	36,800	◇◇◇◇(주)
30	연구활동비	연구활동비 기타비용	2025.05.20	외부 인터넷 회선 사용료_02월	368,000	36,800	◇◇◇◇(주)
31	연구활동비	연구활동비 기타비용	2025.05.20	외부 인터넷 회선 사용료_03월	368,000	36,800	◇◇◇◇(주)
32	연구활동비	연구활동비 기타비용	2025.05.20	라우터 회선 사용료_01월	27,500	2,750	◇◇◇◇(주)
33	연구활동비	연구활동비 기타비용	2025.05.20	라우터 회선 사용료_02월	27,500	2,750	◇◇◇◇(주)
34	연구활동비	연구활동비 기타비용	2025.05.20	라우터 회선 사용료_03월	63,445	5,145	◇◇◇◇(주)

현지조치 사항

①○○○○○본부(□□□□□실장)은 환급가능한 부가가치세를 사용 금액에 포함하였으나 복원되지 않은 974,554원에 대하여 RCMS 복원 기능을 통해 환수하였다. 【현지시정】

②○○○○○본부(☼☼☼☼☼실장)은 환급가능한 부가가치세를 사용 금액에 포함하였으나 복원되지 않은 450,000원에 대하여 RCMS 복원 기능을 통해 환수하였다. 【현지시정】

일련번호	2	감사자	●●●	공개(○),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본부(☆☆실)	처분요구일	2025. 12.	회신 기한일	-

모 범 사 례

제 목 연구개발비의 부적정 집행 적발업무 적극수행

관 련 부 서 ★★★★★본부(☆☆실)

조 치 부 서 ★★★★★본부(☆☆실)

내 용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9조에 따라 산업기술혁신사업의 과제기획 및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한편,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감사실은 연구개발기관의 연구비 부적정 집행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부패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접수된 신고 건은 사실관계 확인 및 조사를 실시하여 결과 통보 및 후속 조치를 수행하고 있다.

☆☆실 ◆◆◆ ♣♣♣♣은 연구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한 것으로 의심되는 외부 신고 건에 대해 법률 검토가 필요한 영역에서 전문지

식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지원 업무를 수행하였다.

또한, 현장실태조사에도 감사실과 동행하여 담당자 면담을 통한 사실관계 확인, 연구개발기관에서 제출한 증빙검토 등의 업무를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참여함으로써 연구개발과제(1개)에서 연구재료비 허위 증빙 등 총 231,250,628원의 연구개발비 부적정 집행 사실을 확인하는데 일조하였다. 이를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집행의 투명성 향상에 기여하였다.

조치할 사항

★★★★본부(☆☆실장)은 성실하고 적극적인 업무자세로 연구비 부적정 집행 방지에 기여한 관련자에게 타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격려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범사례】

[관련자] ☆☆☆

■■■■급(♣♣♣♣)



소 속	직 급	성 명
☆☆실	♣♣♣♣	◆◆◆
제목: 연구개발비 부적정 집행 적발업무 적극 수행		
추	천	내 용
□ (추진배경) 내부고발(자진신고)에 따른 연구비 부적정 집행 의혹 인지 ○ 과제 공동연구개발기관((주)◆◆◆◆) 연구책임자의 자진신고*로 □□□□□ 실은 해당 기관의 연구재료비 부적정 집행 의혹 인지 (25. 5.경) - 자진신고 내용 기반 연구비 부적정 집행 해당 여부에 대한 법률 검토 요청 * 허위 거래명세서를 RCMS에 지출 증빙자료로 등록하여 연구비를 집행한 사실 자진신고 □ (추진내용) 연구비 부적정 집행 의혹에 따른 단계적 법률 지원을 통한 후속조치의 적법성 담보 및 법률리스크 예방 ○ (사전 법률 검토) 연구비 부적정 집행 여부 판단을 위한 사전 법률검토 실시 (25. 6.경) - 연구비 부적정 집행과 연구비 부정사용 구분 판단기준 법률 검토 - 연구비 부적정 집행 해당 여부 판단 및 판단을 위한 증거자료 법률 검토 - 연구비 부적정 집행을 유형 구분 및 필요한 추가 입증 자료 범위 검토·제시 ○ (당사자 면담 조사) 현장실태조사 전 자진신고자(연구책임자) 인터뷰 진행 (25. 6. 24.) - 자진신고자 인터뷰 시 동석하여 사실관계 확인 질의 및 직원에 대한 법률 조력 - 사실관계 확정에 필요한 추가 입증 자료 제시·요구 ○ (현장실태조사) ☆☆☆·감사실 합동 현장실태조사 동행 지원 (25.10.22.) - 실태조사 전 필요한 조사 내용·범위 검토 및 민원발생 최소화 방안 제시 - 기업 내부 ERP 연구비 집행자료 기반으로 한 부적정 집행내역 확인 및 인터뷰 진행 - 확인서의 증거가치 및 법률리스크 예방을 고려하여 확인서 문구 작성 자문 □ (추진결과) 감사실 특정감사를 통해 연구비 부적정 집행액 회수 조치 ○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수행한 과제에 대한 연구비 부적정 집행 사실 확인 - 연구재료비 부적정 집행액 252,581천원 적발 * 연구비 부적정 집행액 252,581천원 중 정부지분에 해당하는 231,251천원 회수 □ (환류) 사업부서-☆☆실-감사실 협업체계를 통한 연구비 부정 적발 ○ 사업부서-☆☆실-감사실 간 긴밀한 소통 및 전문역량 협력 구축 - 연구비 부정 사전탐지 이후 신속한 법률검토를 통하여 적발조치의 적법성 담보 및 예산 집행의 안전성과 효율성 제고		